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이인숙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며, 조례의 형식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벗어나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(법제처 권고)

나. 주요내용

-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 589m²를 공덕동(법정동)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.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며, 조례의 형식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벗어나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 589㎡를 공덕동(법정동)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명칭 및 구역확정 변경 연혁표를 보면 12번째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른 발생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고,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